

TV탐사보도 프로그램의 법적분쟁에 나타난 특성 연구

이승선*

(목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취재 대상의 비리·부정을 추적하고 고발·폭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인격권 침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기획·취재·보도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고 차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방송3사의 대표적인 탐사보도프로그램 <추적60분>, <PD수첩>, <그것이 알고싶다>를 상대로 한 총 35개의 법적 분쟁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향후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공적 존재의 공적활동에 대한 탐사와 고발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고 법적 분쟁에서 패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향후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취재과정에서 위법성을 배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대한 취재대상에게 실질적인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 인한 법적 분쟁에서 법원은 최근 언론소송 일반에 적용되고 있는 공적존재 보도에 대한 언론의 '입증부담 완화' 법리를 '일관되고 폭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탐사보도 프로그램 제작진에 대한 재교육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유용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탐사보도, 시사고발, 방영금지, 반론권, 명예훼손, 공인, 공적존재, 언론소송

1. 문제제기

‘시사보도 프로그램 또는 시사고발 프로그램은 심층적인 ‘보도’가 필요한, 혹은 성역 없는 ‘고발’이 필요한 ‘시사적’ 아이템들을 다룸으로써 저널리즘

* girirang@mokwon.ac.kr

본연의 사회 환경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정 출입처를 근간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취재원과 언론의 유착으로 인한 ‘보도’ 저널리즘의 폐해를 막는 한편,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련 쟁점을 규명할 수 있는 이점을 발휘한다. 또한 구성원 간의 팀워크나 가동성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소수의 정제된 아이템을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기획·취재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심층성과 완성도 측면에서 여타의 저널리즘과 차별적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시사보도 프로그램들은 간단없는 의혹 제기로 은폐된 진실을 찾아내는 개가를 올리기도 하고,¹⁾ 소위 ‘성역’을 참칭하면서 언론의 접근을 거부해 온, 언론 스스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정치·경제·언론 영역에 대한 취재·보도·고발을 이어왔다.²⁾ 공권력에 의해 침묵당해 온 인권유린의 실체를 공론화 해 대중의 관심을 촉발하고 정부의 대응책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³⁾ 보복의 위협과 실제 보복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도 흑세무민하는 사이버 종교의 충격적 실상을 폭로하는 기개를 펼쳐 보였다.⁴⁾

대표적인 브랜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되면서 각 방송사 내외부로부터

-
- 1) 이를테면, ‘살인 미스터리 - 누가 수지김을 죽였나’, ‘여간첩 미스터리 2 - 수지김 사건의 전모’(SBS <그것이 알고 싶다> 2000. 2. 12/ 2001. 11. 24); ‘암살인가? 실종사인가?-재야인사 장준하의 죽음’, ‘거사와 암살 - 재야인사 장준하의 죽음’(SBS <그것이 알고 싶다> 1993. 3. 14/ 1993. 3. 28).
 - 2) 이를테면, ‘수서 특혜 분양’(MBC <PD수첩> 1991. 2. 5); ‘이종기 리스트’(MBC <PD수첩> 1999. 2. 2); ‘죽벌’(MBC <PD수첩> 2000. 5. 16); ‘이승복 오보의 진실’(MBC <PD수첩> 1998. 9. 22/ ‘다시 신문개혁이다’(MBC <PD수첩> 2001. 1. 16); ‘한국 대형교회’(MBC <PD수첩> 2000. 12. 19).
 - 3) 이를테면, ‘죽음의 섬, 실미도 - 8·23군특수범 난동사건의 진실’, ‘죽음의 섬, 실미도 II’(SBS <그것이 알고 싶다> 2004. 2. 7/ 2004. 3. 13); ‘북파공작원’(MBC <PD수첩> 1999. 2. 23).
 - 4) 이를테면, ‘구원의 문인가? 타락의 뒷인가?-JMS’, ‘JMS 그 후’(SBS <그것이 알고 싶다> 1999. 3. 20/ 1999. 7. 24); ‘이단 파문, 이재록 목사’(MBC <PD수첩> 1999. 5. 11); ‘소쩍새 마을 1, 2, 3’(MBC <PD수첩> 1995. 7. 4/ 1995. 7. 25/ 1995. 9. 5); ‘종말 외치는 신흥종교’(MBC <PD수첩> 1998. 10. 20).

언은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들 프로그램의 문제점 역시 지속적으로 노출돼 왔다. 정보전달과 오락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태생적 한계나 제작·지원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수긍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사회의 부유층·핵심 권력 문제를 천착하지 않고 비켜왔다는 점, 따라서 힘없는 사람들의 작은 권력이나 비리를 주로 다뤘었다는 점, 소재선정에 있어서 특정 부분에 대한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과거 아이템을 답습하는 관행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또 폭력적이거나 음란한 소재를 직접 다룰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맥락에서도 폭력·음란한 영상을 곁들임으로써 프로그램이 선정성의 탓에 걸려들었다는 점, 지나친 고발의욕으로 인해 취재대상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 등도 이들 프로그램이 극복해야 할 문제점으로 꼽힌다.

특히 취재원을 기만하기 위한 신분위장과 신분사칭, 분별없이 사용하는 몰래카메라, 사적 영역에 대한 침입, 동의와 승낙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기로 한 초상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 법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보의 사실성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반론기회의 제공에 인색한 점 등은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가치들과 배치되었다. 부정과 비리를 사회적으로 고발하고 은폐·억압당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하겠다는 오히려 언론윤리강령의 원칙과 취재·보도의 준칙을 벗어난 행위들을 일부 동원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비윤리적·비원칙적 취재·보도 행위들에 대해서 법적 제재와 책임이 잇따라 가해졌다.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방송 전에 방영금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불방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방송 후에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했다. 방송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미 방송을 끝낸 고발 내용들이 공익성과 진실성 혹은 진실이라고 믿었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시사고발 프로그램들이 전달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었다고 하더라도 취재대상이 청구한 반론권이 인용되는 사례들이 등장, 취재원들이 이를 ‘정정보도’라고 대중을 미혹하는 사

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 연구는 시사고발 혹은 시사보도 프로그램으로 불리기도 하는 텔레비전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혁혁한 공적 기능 수행에도 불구하고 빈번하게 법적 분쟁에 연루되는 까닭을 천착해 보아야 한다는 데서 출발하였다. 나아가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직면하고 있는 법적 분쟁의 특성과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향후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대응방향을 모색해 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용어상의 중복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시사보도·시사고발·TV저널리즘이라는 여러 용어들을 ‘TV탐사보도 프로그램’⁵⁾으로 통일해 사용하기로 한다.

2. 탐사보도로 인한 법익 갈등과 이익 조정의 법리

언론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자치에 필요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

-
- 5) 시사고발, 시사보도, 탐사저널리즘, 탐사보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다 그 기능과 역할 역시 상이한 점이 있긴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이들 유사 프로그램을 ‘탐사보도 프로그램’이란 용어로 통일해 사용하기로 한다. 탐사보도는 정부나 사회의 부정, 부패, 비리, 위선 등을 파헤쳐서 폭로하고 고발하는 보도 형태로서(김상수, 1998, 1쪽) 이미 밝혀진 단순 사실이나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사실들을 추적하여 발견하며, 이를 사회의 만인이 알도록 고발하여 궁극적으로는 사회정의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김우룡, 2000, 107쪽).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사회 문제적 사건 현장에 접근하여 생동감 넘치는 영상언어와 분석적 심층취재를 통하여 사회문제의 발생배경과 그 내용을 시청자들에게 폭로하는 탐사저널리즘”에 속하는 것으로(윤혁, 1998, 1쪽) 단순히 뉴스를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 각계각층의 비리, 부정, 부조리, 불합리를 추적하고 고발하는 저널리즘 기법이다(김우룡, 2000, 7쪽). 이런 맥락에서 김문환은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제일 중요한 요인이 결국 고발대상자라면서, 탐사보도는 부정·부패, 비리·비행, 불법, 제도 미비 등의 현상과 이를 빚어낸 주체가 고발대상으로 명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고발 대상이 뚜렷하지 않거나 고발 대상을 명확히 잡지 못하면 탐사보도의 실패작이라고 규정한다(김문환, 2001, 14~15쪽).

달하고 국민의 여론형성에 기여한다. 뿐만 아니라 권력기관의 부패·타락 등을 견제하고, 국민들이 선택한 공직자들이 국민에 대하여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지의 여부를 감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언론의 보도에 의해 개인이나 단체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 또한 늘어왔다. 독자나 시청자들의 대중적 취향에 영합하기 위해 개인의 스캔들이나 사생활 폭로를 일삼는 등, 언론매체의 본래의 기능에 역행하는 측면이 점차 증대하여 왔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이광범외, 2002, 15~16쪽). 이러한 갈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와 역시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 간의 조화를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하는 딜레마를 숙제로 던진다.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이유로 언론의 자유를 확장할 경우, 인격권의 침해를 구제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지고, 반대로 인격권을 두텁게 보호할 경우 언론의 취재·보도 활동이 그만큼 위축되기 때문이다.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취재 대상의 비리·부정을 추적하고 고발·폭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인격권 침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기획·취재·보도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고 차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자칫 편성기획자의 의사에 의한 진실의 왜곡이나 흥미위주의 과장보도가 문제될 수 있고, 반면에 시사고발 대상자의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저항은 취재과정에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 지속될 수 있는 문제이다(성낙인, 2000, 197쪽). 또 특종을 건지거나 선정적인 내용을 제작하려는 경쟁에 의해 사실에 대한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고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도 문제이다(한진만·박천일 외, 2000, 294쪽). 김우룡도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보도의 불공정성, 선정성, 개인의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인권유린과 같은 역기능적인 요소들이 산재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텔레비전은 어떤 문제의 한 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과장되게 표현하여 그 문제에 관한 시청자의 인식을 그르치게 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고 심각하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의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활동이 오히려 사적 이익을

해치는 행위가 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제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우룡, 2000, 116쪽).

그러나 법익의 보호와 침해, 특히 취재과정의 위법가능성에 대해 현장 종사자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한다. 즉, 현장에서는 위장촬영, 특히 몰래카메라, 신분위장, 거짓말 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위장촬영은 취재 대상이 허가해 주지 않기 때문에 취재 내용을 몰래 촬영하는 것을 말하는데, 고발뉴스는 위장촬영이 없으면 뉴스 제작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뉴스란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고, 취재 대상이 취재를 거부한다고 해서 취재를 포기한다면 진실추구를 포기한다는 말과 같다는 것이다. 결국, 진실이 담긴 현장을 시청자에게 전달해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위장촬영의 목표이자 당위라는 것이다(김문환, 2001, 114~115쪽). 신분을 위장하는 경우에도 고발뉴스의 대부분은 기자라는 신분이 드러나면 바로 쫓겨나가거나 취재원이 전혀 취재에 협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신분을 감추거나 손님이나 구매자·이용객인 것처럼 위장하거나 현장에 몰래 잠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잘못된 현장을 고발하는 것인데다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취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고발뉴스를 만드는 제1 요건이라는 것이다(김문환, 2001, 120~123쪽).

그러나 은희현(1997)의 견해는 다르다. 즉, 기자와 PD의 신분을 속여 현장 또는 취재원에게 접근하는 것, 고성능 특수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는 것, 으스스한 곳에 스며들어 비밀 취재하기, 상황을 위장하거나 대리인을 내세운 취재, 잠복 또는 함정 인터뷰 등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변칙적인 취재방법은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 오늘날의 통설이라고 본다(1997, 27쪽). 김옥조(2001)도 기자든 프로듀서든 취재에 임할 때는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기본 예의이고 이는 모든 직종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당연한 직업윤리라고 평가한다. 특히 진실추구를 본령으로 하는 언론에 있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문제이며 기자나 프로듀서는 취재시 자신의 신분뿐만 아니라 취재목적도 함께 밝히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다. 나아가 김옥조는 현재 한국의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 몰래 녹음·카메라가 너

무 과용되고 있다면서 몰래 카메라는 초상권 침해 등 법률적으로는 물론 윤리적으로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몰래카메라는 피사체의 동의 없이 촬영·보도된다는 점에서 초상권 침해 등 명백한 위법행위이고 촬영시 피사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피사체의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촬영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피사체의 의견을 물어 거부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2001, 128~134쪽).

코바치와 로젠스틸(2003)은 소형 몰래카메라를 이용하는 식의 위장 취재의 허용기준에 대하여, 첫째, 속임수를 정당화 할 수 있을 정도로 공익에 더없이 중요한 정보여야 하고, 둘째, 정보를 얻은 방법이 그것 밖에는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장 수법을 써서는 안 되며, 셋째, 정보를 얻기 위해 취재원을 오도할 때마다 독자·시청자에게 그 사실을 밝혀주고 그렇게 한 이유를 설명해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왜 기사가 속임수를 정당화하는지, 왜 이것이 사실을 얻는 유일한 방법인지를 설명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2003, 120~121쪽). 미국의 윤리강령이나 직업 기준 등에는 비밀 취재나 거짓 행세, 속임수 등에 관해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별 언론기관 중 NBC는 “NBC 보도요원에 의한 거짓행세는 조사를 위한 목적이라도 필요치 않으며 따라서 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ABC방송은 기자들이 “보도 담당 임원들과의 적절한 상의 없이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거나 다른 직업을 가진 것으로 가장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주의를 주고 있다(굿윈, 1995, 149쪽).

그러나 다른 한편, 취재 대상자가 취하는 법적 분쟁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탐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방영금지가처분 제도나 반론권 제도의 문제점은 주로 권력이 있거나 아니면 돈이나 조직이 있는 기득권 세력이 취재에는 절대로 응하지 않고, 어렵게 프로그램을 제작 하면 방송 직전에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내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반론권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면 이를 정정보도나 사과방송을 한 것으로 추종자들에게 약선전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최영목, 2002, 80~81쪽).

윤리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격권 보호의 원칙과 위장·위법적 취재의

억제방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인격권 침해는 크게 두 가지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다.

첫째, ‘취재과정’에서 취재 대상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이다. 특정한 사건을 심도 있게 탐사해서 폭로하기 위해서는 고발 대상자가 필요한데, 고발 대상자에게 접근하고 고발할 내용을 카메라에 담은 과정에서 위법적 취재행위가 수반될 수 있다. 신분위장과 신분사칭, 주거침입과 퇴거불응, 자료 절취, 몰래카메라의 사용, 강압적 인터뷰, 함정취재와 같은 관행들이 취재과정에서 취재 대상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 취재과정의 위법을 이유로 제작진은 형법상의 비밀침해죄(제316조),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제319조), 주거수색죄(제321조), 절도죄(제329조), 공무원자격사칭죄(제118조)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서신열람이나 도청과 관련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4조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둘째, 취재 후 ‘방송보도’를 통해 인격권 침해가 발생한다. 명예훼손·초상권침해 그리고 사생활침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명예훼손의 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면 성립하는 범죄이고 형사상 죄의 구성과 위법성 조각의 요건이 민사소송 절차에도 준용되고 있다. 공적인 사안에 관한 탐사와 고발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사인에 비해 언론자유 보호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익성과 진실성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였을 경우 법적 책임이 가중되고, 비방의 목적이 입증될 경우에 언론은 더욱 가혹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보도과정 혹은 보도 후에 취재대상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시사고발 프로그램 제작진·방송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명예훼손과 더불어 초상권 침해, 사생활침해 등을 함께 묶어서 청구하기도 한다. 물론 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나 사생활침해를 별개의 것으로 문제삼기도 한다. 또 익명보도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소년법 제68조, 가사소송법 제10조·제72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1조,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법 제8조 등에 의한 책임을 질 수 있다.

인격권 침해를 빌미로 언론의 취재보도 활동을 전략적으로 위축·억제시

키려고 도모하며 균형 있는 여론형성을 위하여 주어진 반론행사의 기회가 오히려 약용당하는 현실의 문제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TV탐사보도 프로그램이 환경감시라는 언론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묘법은 없는가? 더욱이 시사고발 혹은 탐사보도 과정에서 필요이상의 선정적·위법적인 아이템과 내용구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 해법의 하나로 공적사안에 대한 탐사보도 프로그램 보도의 면책범위 확장과 사적내용·위법취재방식에 대한 엄정책임 추구라는 접근법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언론법 학자들은 한국의 법원이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언론소송에서 과거와 구분되는 법리를 심판에 적용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1999년 헌법재판소 97헌마265결정과 이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입증부담 완화'의 법리가 언론소송에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⁶⁾ 공인에 대한 언론보도의 면책범위를 확장하면서 더불어,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언론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요약된다. 공직자·공적인물 등 공인에 대한 의혹의 제기 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한위수, 2004, 27쪽; 문재완, 2004, 6쪽; 신평, 2002, 191쪽; 차용범, 2002, 416쪽; 이승선, 2004).⁷⁾

이 법리는 공적 사안, 특히 공인의 공적활동에 대한 보도의 면책범위를 크게 확장하고 있거니와 진실오인에 대한 언론의 입증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는 것으로 이전의 상당성 이론에 비해 크게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6) 이를테면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7) 2003년 언론관계 판결의 동향을 분석한 성선제에 의하면 그 전에 형성된 이론적 기초와 판례를 바탕으로 이 해에는 다양한 이론과 판례가 형성되었는데 언론의 자유에 무게를 두는 내용의 풍부한 판례가 다량 생산되었다. 특히 공인의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은 대부분 언론의 감시 및 비판 기능을 중시하여 공인 패소 판결이 주류를 이뤘다(성선제, 2004, 51~62쪽).

그런데 이 ‘입증부담 완화’라는 법리를 TV탐사보도 프로그램의 법적 분쟁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탐사하고 고발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송의 위법적 취재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의 면책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방송현업 종사자들 중에는 취재대상으로부터 국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장과 잠입등 위법적 취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나 윤리강령·저널리즘의 원칙 등에 비춰볼 때 이는 극복되어야 할 방법들이다. 또 언론소송의 실무에서도 언론의 책임을 묻는 경향이 매우 뚜렷하다. 법조로부터는 오래전에 위법한 취재방법에 의한 정보의 수집 또는 조달은 취재 자유의 범위 내에 들지 않으므로 보호될 수 없고 특히 그 방법이 형법 등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당연히 일반적인 법리에 따라 형사책임이 추궁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돼 왔다(김재철, 1999, 73~75쪽). 공개된 방송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의 면책을 확장하는 대신 취재과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겠다는 원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TV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아이템과 방송내용이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적 영역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행위인가, 라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특성을 분석, 평가한 연구들에 의하면 여전히 소재의 편중과 선정성, 그리고 시청자의 흥미를 자극하는 자극적·선정적·폭력적 장면제공, 사회부유층의 문제를 거론하는 대신 힘없는 사람들의 잘못과 병리현상만을 다룬다는 등의 혐의가 짙다(김진웅, 2000; 심미선, 2000; 강형철, 2000). 공인의 범주로 포함되긴 하지만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의 공인과 다른 특성을 갖는 연예인들의 경우, 언론의 ‘입증부담 완화’에도 불구하고 언론소송에서 보도에 따른 면책가능성이 매우 낮았다(이승선, 2004). 이러한 점은 TV탐사보도 프로그램이 시청률을 의식한 소재를 과도하게 선정하고 사적 생활의 폭로와 연예성 아이템과 내용을 구성하는 대신 공적존재의 공적활동, 혹은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한 문제들의 사회적 고발과 탐사보도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의 보호와 언론자유간의 규범 조화적인 균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최근 법원이 취하고 있는 법

리가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제작·방송과 관련해 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격권 침해유형과 법적 책임, 그리고 법원의 법리 변화 등을 감안,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해 보기로 한다.

첫째, TV탐사보도 프로그램의 방영금지가처분신청 사건 심판에 나타난 법원 결정의 특성은 무엇인가?

헌법재판소는 방영금지가처분제도가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바 있다.⁸⁾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인격권이 무분별한 언론보도로 인해 훼손돼서는 곤란하지만, 한편, 방송을 사전에 억제시키는 것은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 행위이다. 따라서 TV탐사보도 프로그램의 방영을 사전에 금지시킬 것인가를 심판함에 있어서는 사후의 법적 책임을 묻는 것에 비해 훨씬 명확하고 엄격한 요건과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적존재의 공적사안과 관련된 보도일 경우 최근 법원이 언론소송에 적용하고 있는 법리를 반영, 인용심판은 더욱 제한적이어야 하며 대신 방송을 통한 공적논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과 기준이 법원 결정·판결에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동시에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특성이 심판에 반영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둘째, TV탐사보도 프로그램에 방영된 방송내용을 이유로 청구한 반론보도청구사건에서 법원이 취한 심판의 기준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반론권의 취지는 무기대등의 원칙 위에서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는 한편, 균형 잡힌 정보의 공급과 수용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경우 기획 아이템을 선명하게 부각시켜 전달하려는 제작진의 의욕으로 인해 자칫 일방적 정보전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 시청률 경쟁의 유혹에 빠져 선정적인 장면이나 내용, 거두절미식 인터뷰 내용들로 편성될 가능성도 있는바, 이러한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이 반론보도청구사건에서 어떻게 심판되고 있는지, 심판의 기준과 문제점들을 규명해 보려고 한다.

8)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2000헌바36 결정.

셋째, TV탐사보도 프로그램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의 특성과 법원이 채택한 청구인용·기각 심판의 기준은 무엇인가? 특히 최근의 법원의 법리변화가 탐사보도 프로그램 소송에도 적용되고 있는가?

언론법 학자들은 헌법재판소의 97헌마265 결정과 대법원 2000다37524,37531 판결 이후 언론소송에서 언론의 자유가 획기적으로 신장되었다는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공적존재의 공적활동에 관한 보도사안의 경우 진실오신 상당성의 폭을 크게 확장해서 해석하고 있고, 공인에 대한 의혹제기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한 언론의 입증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서는 안된다는 법리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한편, 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와 취재과정의 위법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언론의 책임을 추궁하는 경향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법리의 변화를 감안해 이 연구에서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소송의 특징을 분석하고, 나아가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거나 혹은 기각하는데 법원이 어떤 기준과 원칙을 적용하는지, 그리고 법원이 채택한 법리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를 규명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상파 방송3사의 대표적인 탐사보도 프로그램 3개를 선정하고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방영금지가처분신청건, 반론보도청구건, 손해배상청구건, 그리고 기타 법적 대응 사례들을 수집, 분석하기로 한다. 각 방송사의 프로그램은 KBS <추적60분>, MBC <PD수첩>, SBS <그것이 알고싶다>이다.

3. 분석결과의 논의

1) 자료의 수집과 분석

탐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분쟁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는 몇 단계의 자료 수집과정을 거쳤다. 우선, 한국언론재단의 KINDS, 한국기

자협회 홈페이지, 미디어오늘 홈페이지, 프로듀서연합회 홈페이지의 기사검색을 통해 1차 자료를 수집하였다. <PD수첩>, <그것이 알고싶다>, <추적60분> 등 해당 프로그램 명은 물론, 탐사보도·시사고발·탐사고발·시사다큐·시사보도·고발·탐사·방영금지가처분·명예훼손·반론권·정정보도·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였다. 이러한 1차 자료를 분석해서 실제 소송까지 이른 사례를 찾아내고, 두 번째 단계는 해당 판결과 결정문을 입수하는 절차였다. 한국언론재단의 언론관련판례정보 646건을 검토해 본 연구에서 다뤄보고자 하는 사례일 경우 추출하였고, 언론중재위원회가 펴낸 『언론관련판례집』 제1권부터 제11권, 『계간 언론중재』 각 호에 게재된 관련 사례 역시 수집하였다. 기사 검색을 통해서도 판결·결정 사항이 보도됐으나 관련 사이트와 자료집 등에서 판결·결정문을 구할 수 없는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사의 관련 부서를 방문, 협조를 구했다. 판결문을 보관하고 있지 않거나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대략의 정보, 예를 들면, 사건번호와 판결일자, 방송일자 및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이기는 하지만, 취재대상이 청구하거나 고소·고발한 사건이 아닌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⁹⁾ 그리고 2000년 5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룬 ‘빛나간 구원의 목자들’ 편과 관련 이호형이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는 신청인이 변론에 2회 불출석함으로써 기각되었고 이 사례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총 분석사례는 35건이었다(<표 1> 참조). 관련 사례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쳤을 경우, 최종심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한 건의 사례로 처리하였다. 또 동일한 취재·보도 사건에 대해 취재대상이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각각 별도의 사건으로 분석하였다.

9) 헌법재판소는 2001. 8. 30.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의 가처분에 방송프로그램의 방영금지가처분을 포함시키는 것은 언론자유 침해라는 문화방송의 위헌소원 사건에서 동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시 결정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 MBC측이 1999년 5월 <PD수첩>이 방영한 ‘목자님 우리들의 목자님’의 방영중단과 관련, 만민중앙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해 7억5천만 원을 배상받게 된 사례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1> 탐사보도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대응 사례의 특성

유형	청구 신청인 (피고인)	대상 프로	판결 결정일	사건번호	방송일 (예정일)	결과	비고	
방영 금지 가처분	이정재	그것이	2003.5.10.	서울지법남 부지원 2003 카합1156결 정	추후	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핵환자보호시 설에 대한 의혹제 기 • 공공성/진실성 소명부족// • 사정 변경에따른 가처분 취소신청 기각 (2004.7.8.) 	
	인 권 학 원	그것이	2002.2.2.		2002.2.2.	기각	• 전교조주장 허위 라며 방금신청	
	인 권 학 원	그것이	2002.3.25.		2002.3.23.	기각		
	만 민 중 앙 교 회/ 이재록	PD수첩	2000.4.20.	서울고법 99 나27783	1999.5.11. 1999.5.12.	1심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강제 원심결 정변경 • 나머지청구 신청 인들의항소기각 	
			1999.5.11.	서울지법남 부지원 99카 합1131	1999.5.11.	일부 인용	• 성추문관련 보도 금지	
	김영중	그것이	1999.5.20.	서울고법 99 라108결정			기각	• 공공성,진실성 / • 종교
			1999.3.16.	서울지법남 부지원 99카 합451결정			기각	• 공공성,진실성
	오동섭	PD수첩	1998.12.1.	서울지법남 부지원 98카 합6460결정	1998.12.1.	기각	• 변호사 / • 피보 전권리 소명부족	
	김 봉 임 외	PD수첩	1999.3.9.	서울지법남 부지원 99카 합640결정	1999.3.9.	기각	• 신청이유없음/ • 학교,교수임용	
	하정효	PD수첩	1999.8.25.	대법원 99마 3397결정			기각	
			1999.5.27.	서울고법 99 라82결정			기각	
			1999.2.20.	서울지법 98 카합4070결 정	1998.11.24.	기각	• 하정효-공적인 물, 보도 용인해야 함	

	세계복음선교협회	추적60	1999.7.15.	서울지법남부지원 99카합1924결정	1999.7.15.	기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법성조각됨 • 신청이유없음
	김수국	PD수첩	1999.8.3.	서울지법남부지원 99카합1943결정	1999.8.10.	기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이유없음/ • 사인/ • 고시인생 건다
	윤태식	그것이	2000.2.11.	서울지법남부지원 2000카합291결정	2000.2.12.	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지김사건/ • 공공성의심스럽고 신청인을 살인범으로 보기어려움
	한홍학원	PD수첩	2000.7.4.	서울지법남부지원 2000카합1689결정	2004.7.4.	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진행중인사건/ • 사전 보도하지않기로 합의한바 있어서 방금/ • 교사문제
	김기순	그것이	2001.7.28.	서울지법남부지원 2001카합1627결정	2001.7.28.	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법원무죄판결사건/ • 공공성, 진실성 보기어려움/ • 새로운사실없음
	이임출외	그것이	2001.11.9.	서울지법남부지원 2001카합2445결정	2001.11.10.	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법성조각안됨/ • 사인들
	대순진리회	PD수첩	2002.2.14.	서울지법남부지원 2002카합254결정	2002.2.14.	기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의소명부족
반론보도 청구 소송	정oo	PD수첩	2003.10.9.	서울지법남부지원 2003카합2180	2003.6.17.	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 보호국장
	정보통신부	PD수첩	2003.2.13.	서울지법남부지원 2003카합14	2002.11.19.	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TV전송방식에대한보도 • 중재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하정효	PD수첩	2000.3.24.	대법원 99다63138판결		기각	
			1999.10.14.	서울고법 99나27325판결		기각	
			1999.4.22.	서울지법남부지원 99카	1998.11.24.	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론보도인용판결받았으나, 횡수/

			합91판결	1998.12.22.		방법등에 불만제기 항소	
강대조	PD수첩	1996.1.11.	서울지법남 부지원 94카 합1017결정	1994.3.15.	기각	• 행사에정당한이 익없음 • 태안기도원목사	
학교법 인영석 학원	PD수첩	1993.10.8.	서울지법남 부지원 92가 합16462	1992.9.1.	인용		
이국	그것이	1994.6.23.	서울지법남 부지원 94카 합337결정	1993.11.21.	인용	• 산부인과전문의	
천부교 승리재 단광주 삼천년 삼성	추적60 분	1994.10.31.	서울지법남 부지원 94카 합1029결정	1994.3.27.	인용		
손해 배상 청구 소송	덕성학 원의	PD수첩	2003.4.18.		2001.3.20.	기각 • 피고=MBC+노 혁진,김새별PD	
	감미숙	그것이	2003.3.27.			기각 • 진실상당성 인정	
			2002.5.10.		2000.9.23.	기각	
	하정효 의	PD수첩	2002.4.2.	서울지법 99 가합78203판 결	1998.12.10.	인용	• 피고=윤길용 • 보도내용=위법 성조각/• 촬영위해 침실침입사실에 대 한법적책임
	하정효 의	PD수첩		서울지법 98 가합111257	1998.12.10.	인용	• 피고=MBC(사 용자책임)/500만원 • 주거침입 및 방 송인한사생활침해 책임
	광림교 회	PD수첩	2001.9.26.	서울지법 2001가합 11180판결	2000.12.19.	기각	• 피고=MBC+최 승호PD • 공공성, 진실성, 공정논평
	곽기웅 나상국	그것이	1999.4.2.	서울지법남 부지원 98가 합16587판결	1998.6.14.	인용	• 피고=SBS+민 인식PD /• 각자 3 천,2천만원씩배상 /• 명예훼손,사생 활침해, 초상권침

						해 / ● 승낙범위 벗어남
	K 씨(국과수전직원)	그것이			1998.11.1.	인용 ● 1천5백만원/ 거짓말탐지기탐지관 자료화면사용과실
	이상한	그것이	2000.3.29.	서울지법 99가합34685판결	1998.9.13.	인용 ● SBS 외 여러 언론 피소/ ● 그것이+8 시뉴스보도책임/ ● 방영않겠다는 약속 불구 방영한 위법 책임져야함
	이강창	그것이	1999.10.22.	서울지법 99나49001판결		인용 ● 1천5백만원
			1999.5.14.	서울집버북부지원 98가단779판결	1997.11.23.	인용 ● 촬영거부의사표시 무시하고 방영 ● 원고신분노출해 초상, 음성권침해
	정금자	PD수첩	1998.9.4.	대법원 96다11327판결		인용 ● 피고=MBC+ 정성후PD ● 승낙범위초과해 원고사생활침해
			1996.2.2.	서울고법 95나25819판결		인용 ● 1천만원배상
			1995.6.13.	인천지법 94가합16812판결	1994.7.5.	기각 ● 방송관례나 사회 통념에 비취적절조치함, 피고들과실 없음
	OOO	PD수첩			1996.3.12.	인용 ● 500만원배상
형사	최철호	추적60분	2002.9.12.		2002.5.18.	벌금 ● 벌금300만원/분당과크뷰특혜분양건/ 검사신문사청/ 구속기소돼 보석석방/ ● 항소심서 벌금300만원 선고유예
	홍OO 윤OO	PD수첩	2004.4.21.		1999.2.2.	벌금 ● 각각벌금300만원/ '절저해부 이종기리스트'/ 진실 오신상당성없다고 판단

2) 분석자료의 일반적 특성

전체 분석 사례는 방영금지가처분 신청 15건, 반론보도청구소송 7건, 손해배상청구소송 11건 그리고 형사처벌 2건이었다. 전체 35건 중에서 종교 관련 사례가 13건으로 37%를 차지하였고, 정책·정치 부문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는 2건(5.7%)이었다. 최종심을 기준으로 인용 및 기각 비율을 검토한 결과, 방영금지가처분은 15건 중 6건이 인용되었고(40%) 9건이 기각되었다. 15건 중 14건이 ‘결정’에 의해 인용되거나 기각되었고 만민중앙교회와 이재록 목사가 신청한 사건은 ‘판결’에 의해 일부 인용되거나 항소심에서 1심 변경 판결이 내려졌다. 인용된 사건의 경우, 방송용 테이프에 대한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토록하거나,¹⁰⁾ 방송금지를 위반할 때 행위 1건당 5천만 원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명령이 내려지기도 하였다.¹¹⁾ 법원에 의해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재판이 진행 중이고 당사자간에 보도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점,¹²⁾ 대법원에 의해 무죄가 확정되었고 방송을 통해 나타날 새로운 사실이 없다는 점,¹³⁾ 사인들과 관련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¹⁴⁾ 등이 인용의 근거가 되었다. 그리고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영할 예정이었던 ‘자선의 그늘-구산동 결핵 환자촌 이야기’ 편이 법원에 의해 방송금지가처분 인용 결정되었으나 업무상 횡령혐의로 이정재 이사장은 후에 서울서부지검에 구속되었다. 이에 서울방송은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취소 신청을 냈으나 2004년 7월 8일 기각되었다. 또,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누가 수지감을 죽였나’ 편에 대해 법원은 남편 윤태식을 살인용의자로 지목한 것은 윤씨의 인격권을 침해하며, 방송내용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이

10) 서울지법남부지원 2003. 5. 10. 선고 2003카합1156 결정.

11) 서울지법남부지원 1999. 5. 11. 선고 99카합1131 판결.

12) 서울지법남부지원 2000. 7. 4. 선고 2000카합1689 결정.

13) 서울지법남부지원 2001. 7. 28. 선고 2001카합1627 결정.

14) 서울지법남부지원 2001. 11. 9. 선고 2001카합2445 결정.

유료 방송을 금지시켰으나 얼마 후 남편 윤태식은 수지 김을 살해한 사실이 밝혀져 법원의 결정을 무색케 했다.

반론보도청구소송의 경우, 7건의 청구소송 중 5건이 인용되었고 2건은 기각되었다.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거나¹⁵⁾ 방송의 횡수·방법에 비취볼 때 반론보도는 한번에 포괄하여 1회 방송함으로써 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¹⁶⁾ 다른 5건은 주관적인 인격권의 피해를 보전하거나 대립된 주장을 객관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알권리의 신장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용되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11건 중 8건이 인용되고 3건이 기각되었다. 광림교회측이 MBC <PD수첩> 프로그램에 대해 청구한 사건은 공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고 있고 또 공정한 논평의 범위 내에 있는 언론자유 보호 영역이라면서 기각되었고,¹⁷⁾ 덕성학원 등이 MBC <PD수첩> 프로그램 방송을 이유로 청구한 사건과 김미숙 등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을 이유로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공공성과 진실상당성 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 두 건의 판결은 2003년 이후에 내려졌다. 그리고 형사처벌의 경우, 분당파크뷰특혜 분양건을 취재하면서 검사신분을 사칭한 것에 대하여, 또 법원비리와 관련 이종기변호사의 수입비리를 취재·보도한 혐의에 대하여 각각 벌금300만원이 선고유예되거나 선고되었다.

3) 방영금지가처분신청 사례의 특성

헌법재판소는 MBC가 제기한 위헌소원 심판 사건에서 “방영금지가처분이 비록 제작 또는 방영되기 이전, 즉 사전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금지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방영금지가처분은 행정권에 의한 사전심사나 금지처분이 아니라 사법부가 사법절차에 의하여 심리, 결정하는 것이므로 헌법에서 금

15) 서울지법남부지원 1996. 1. 11. 선고 94카합1017 결정.

16)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63138 판결.

17) 서울지법 2001. 9. 26. 선고 2001가합11180 판결.

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의 가처분에 방송프로그램의 방영금지가처분을 포함시키는 것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며, 인격권 침해의 실효성 있는 구제를 위해서는 이미 발생하여 지속하는 침해행위의 정지·제거, 즉 방해배제청구와 함께 침해의 사전억제, 즉 방해예방청구가 허용되어야 한다면서, 이 제도가 인격권의 보호라는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보호수단으로서도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현재는 이 결정에서 사전금지 청구는 언론의 자유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사생활 등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해 이뤄진다는 점, 특히 금지청구권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한 헌법 제21조의 취지 등을 참작하여 충돌하는 두 법익(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비교·형량 등 ‘엄격하고 명백한 요건’ 하에서만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설치하였다.¹⁸⁾ 이규진(2001)도 명예훼손 등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한 사법절차에 의한 금지조치는 헌법상 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가처분을 허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다(31~35쪽).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차단시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상의 자유시장’ 원리에 반하며 검열로 연결되거나 표현행위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적용이 요구되고, 명확하고 엄격한 요건 하에서는 인정되는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한영학, 2004, 67쪽).

실제 탐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나타난 법원 결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용된 경우, 인용의 근거는 취재 대상의 명예를 포함한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진실성·공공성에 대한 언론사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었다.¹⁹⁾ 방송으로 인해 취재대상에게 돌아킬 수 있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이 인정되지만, 방송내용의 심각성에 비취볼 때 객관적인 자

18)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2000헌바36 결정.

19) 서울지법남부지원 2003. 5. 10. 선고 2003카합1156 결정; 서울지법남부지원 2001. 11. 9. 선고 2001카합2445 결정.

료의 뒷받침이나 소명할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²⁰⁾ 또 범죄보도와 달리 범죄용의자에 대한 보도는 범죄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갖기 어렵고 용의자가 수지 김을 살해한 것으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 객관적인 증거 없이 신청인을 살인범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의도가 엿보이나 그렇게 볼 수 없다는 점, 따라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강한 의구심을 든다는 점 등이 인용의 근거가 되었다.²¹⁾ 이에 대해 조규승(2003)은 간이재판으로 인한 부실을 지적하고 있고(104쪽) 이승선(2003)도 명백한 인용기준과 적용의 일관성을 지적하고 있다. 즉, 사전금지청구의 특성을 감안한 ‘엄격 책임주의’ 법리를 적용하는 사례와 사후구제 절차의 ‘공공성·진실성’ 법리를 적용하는 사례가 혼재하고 있다는 것이다(13~14쪽). 황도수(1998)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헌법 제21조 제2항의 명문규정을 고려할 때, ‘엄격한 심사기준’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13~14쪽).

둘째, 기각된 경우, 기각의 주요한 이유는 ‘공적 인물’(public figure)의 경우 당사자의 공적 활동은 물론 그 공적 활동에 관련된 한도 내에서는 사생활의 일부도 언론의 취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과 따라서 이익의 비교형량에서도 공적 인물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고도의 규범성, 통상인에 비하여 많은 정보의 공개 요구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²²⁾, 소명사실에 나타난 것을 감안할 때 방송하려고 하는 내용이 진실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현저히 회복곤란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²³⁾, 방송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명예 등에 현저한 침해가 가하여진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거대 종단의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그와 관련한 부정적 측면에 대한 방송은 공익성을 가진다는 점²⁴⁾ 등이었다.

20) 서울지법남부지원 1999. 5. 11. 선고 99카합1131 판결.

21) 서울지법남부지원 2000. 2. 11. 선고 2000카합291 결정.

22) 서울지법 1999. 2. 20. 선고 98카합4070 결정.

23) 서울지법남부지원 1999. 3. 16. 선고 99카합451 결정.

셋째, 공인·공적인물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과 판단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탐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의 경우, 취재대상의 활동이 충분히 공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취재대상의 사회적 신분 역시 공인·공적인물로 판단하기에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성’ 소명을 인용·기각의 판단 근거로 삼고 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결핵 환자촌 편과 ‘수지 김’ 사건 편이나 MBC <PD수첩>의 ‘만민중앙교회’ 편은 사안 자체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고 취재대상 역시 공인·공적인물로 평가하기에 충분했음에도 방송하려고 하는 사안의 진실성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소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영금지결정이 내려졌다. 특히 ‘수지 김’ 사건에서는 방송하려고 하는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하였다.²⁵⁾ 반면, 하정효 사건에서는 ‘공적 인물’에 속하는 이상, 특정 종교 혹은 특정 종교인의 검증 등을 목적으로 하는 언론의 취재가 있을 경우 그 언론기능의 공공성에 비취 신청인의 공적활동이 취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사생활의 상당 부분까지 취재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용인해야 한다고 실시하고 있다.²⁶⁾

넷째, 진실성에 대한 소명의 주된 책임을 ‘방송’에 두고 있는 사례와 ‘신청인’에게서 찾는 사례가 혼재하고 있는바, 이러한 판단의 잣대가 결과적으로 인용과 기각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피신청인 방송사가 공공성과 진실성·진실오신의 상당성이 있어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²⁷⁾ 방송 내용의 심각성에 비취 다른 객관적인 자료의 뒷받침이 없어 선뜻 믿기 어렵고 성추문 사실을 소명할 자료가 없으며,²⁸⁾ 객관적인 자료의 뒷받침이 없이 피신청인 방송사가 취재한 몇 가지 정황만으로 신청인을 살인범으로 보기 어렵다

24) 서울지법남부지원 2002. 2. 14. 선고 2002카합254 결정.

25) 서울지법남부지원 2000. 2. 11. 선고 2000카합291 결정.

26) 서울지법 1999. 2. 20. 선고 98카합4070 결정.

27) 서울지법남부지원 2003. 5. 10. 선고 2003카합1156 결정.

28) 서울지법남부지원 1999. 5. 11. 선고 99카합1131 판결.

할 것이고²⁹⁾ 따라서 이들 사례는 신청이 인용되었다. 반면, 신청인은 방송할 내용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자료들만으로는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와 같은 자료들만으로는 여전히 방송하려고 하는 내용이 진실에 부합할 것이라는 합리적 추측을 배제하기도 어렵다면서 방송금지신청을 기각하였다.³⁰⁾ 또 대순진리회 등이 신청한 사건에서는 방송이 진실에 반한다는 점에 관한 소명도 없어 이 사건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없다 할 것, 이라면서 신청을 기각하였다.³¹⁾ 오동섭 사건에서도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소감 제2호증(미리보기) 만으로는 이 사건 방송내용이 신청인들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신청을 기각하였다.³²⁾

다섯째, 사전금지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무게중심이 ‘중대·현저한 피해론’과 ‘보도이익 우월입증론’으로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그와 같은 판단의 근거 위에서 방영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되기도 하고 기각되기도 한다. 즉, 언론보도로 인해 취재대상자의 인격권이 회복곤란하고 중대·현저한 피해가 있는가라는 판단과 인격권 침해에 견주어 볼 때 보도를 해야 할 훨씬 큰 사회적 이익이 존재하는가를 판단기준으로 적용하는 사례들이 혼재하였다. 하정효 사건 등에서는 사전금지는 비록 헌법상 금지되고 있는 검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님이 명백한 때이거나 또는 그 내용이 진실하더라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서 가해자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중대하고도 현저히 회복곤란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하여야 한다는 점이 실시되면서 사전금지 신청이 기각되었다.³³⁾ 그러나 아가동산 사건에서는 언론기관의 특정한 보도가 그 보도내용

29) 서울지법남부지원 2000. 2. 11. 선고 2000카합291 결정.

30) 서울지법 1999. 2. 20. 선고 98카합4070 결정.

31) 서울지법남부지원 2002. 2. 14. 선고 2002카합254 결정.

32) 서울지법남부지원 1998. 12. 1. 선고 98카합6460 결정.

으로 인하여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를 포함한 인격권이나 재산권 등을 침해할 개연성이 명백하고, 그 침해에 따른 손해가 사후에 금전 등으로 배상할 수 없거나 쉽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보도내용이 추측 또는 허위 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이고, 그 보도내용의 보도에 따르는 공익적(국가적, 사회적 법익) 요구가 개인 권리의 침해에 따른 고통을 수인케 할 정도로 훨씬 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 이라고 실시하면서 인용 결정하였다.³⁴⁾ 이러한 법원의 태도에 대해 한상혁은 어딘지 모르게 상반된다면서 사실관계 파악에서부터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추론과정을 알 수 없는 제3자로서는 법관의 판단이 너무 자의적이라는 항변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주장한다(한상혁, 2003, 123~124쪽).

4) 반론보도청구 소송 사례의 특성

반론권은 국민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결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또한, 반론권은 언론에 대한 공공의 접근을 보장하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의 현대적 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른 언론에 대한 액세스권의 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즉 반론권은 언론스스로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하여 언론상대방에 대한 반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종래 언론보도의 일방통행적인 정보흐름에 대하여 언론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직접 액세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의 중요한 한 내용을 이룬다(성낙인, 1998, 266쪽). 헌법재판소도 반론권이 인정되는 취지를 두 가지로 제시하는데, 첫째, 언론기관이 특정인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피해를 받은 개인에게도 신속·적절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이 주어져야 마땅하며, 특히 공격내용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끔 보도된 매체 자체를 통하여 방어주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반론권제도가 적절하고 형평의 원칙에도 잘 부합할 수 있다는 점,

33) 서울지법남부지원 1999. 3. 16. 선고 99카합451 결정.

34) 서울지법남부지원 2001. 7. 28. 선고 2001카합1627 결정.

둘째, 독자로서는 언론기관이 시간적 제약 아래 일방적으로 수집·공급하는 정보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반대주장까지 들어야 비로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진실발견과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하여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며 따라서 반론권 제도는 언론의 자유와 합리적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³⁵⁾ 나아가 반론보도청구권의 실현을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절차에 따라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심판절차가 부당하게 간이하게 되어 평등의 원칙에 반하거나 언론자유와 본질적 내용과 언론기관의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다.³⁶⁾ 성낙인(2000)은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익 갈등의 문제를 반론권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방송기획물은 대체로 일주일에 한번 정도 방영되는 공시된 특정 프로그램에서 취재내용을 보도하게 되고, 따라서 기획물의 취재과정에서 특정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며 이때 언론사는 반론보도청구권의 본질에 비추어 참여하게 대립되는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충분한 반론권을 보장하여야 하고 이에 기획물의 취재진으로서 당사자에게 접근하여 당사자의 반론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하고 또 이를 적극적으로 보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213쪽).

반론권의 성격이나 현재결정의 취지를 바탕으로 탐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소송의 특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현재결정의 취지가 탐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의 심판에 원칙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건의 반론보도청구 사례 중 신청인의 주장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거나 원 방송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어 그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³⁷⁾ 방송의 횟수나 방송 방법을 이유로 기각한 경우를 제외하고³⁸⁾ 5건이 인용되었다.³⁹⁾ 법원은 반론

35) 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결정.

36) 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5헌바25 결정.

37) 서울지법남부지원 1996. 1. 11. 선고 94카합1017 결정

권의 성질이 침해된 인격권의 신속한 회복과 동시에, 대립되는 비교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여론형성을 도모함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반론권은 ‘원 방송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반론을 할 권리를 주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이고 ‘문제된 방송의 사실보도내용과 반대되거나 다른 사실을 주장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하여 시청자들로 하여금 균형 잡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실시하면서,⁴⁰⁾ ‘보도에 의하여 사실상 피해를 입은 관련 당사자의 반론이 있을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하게 반론을 보도함으로써 시청자나 독자들로 하여금 보도내용과 관련 당사자의 반론을 비교하여 공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올바른 여론형성을 도모함과 함께, 자칫 대립되는 이해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이 보도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반론권을 규정하고 있다.⁴¹⁾

둘째, 인터뷰한 내용 중 일부만 발췌해서 사용하거나 원래 취지대로 방송되지 않고 편집가능성이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반론권이 인정되었다. 즉, 취재 대상과의 인터뷰 내용을 프로그램의 전개를 위하여 전후로 편집해 사용했을 경우, 원래 의미전달의 왜곡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반론권이 부여되었다.⁴²⁾ 또, “방송내용으로 인하여 시청자들은 보호감호소의 실제 운영 상태가 신청인의 발언과 대조되는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신청인의 발언 내용이 실제로는 모순 된다는 인상을 가질 수 있다고 넉넉히 보이므로, 결국 신청인의 발언 취지를 왜곡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방송사로서는 “시청자들의 주의를 집중시켜야 하는 방송의 속성상 해당 부분을 편집에서 제외할

38)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63138 판결.

39) 이전의 반론보도청구권은 모두 ‘결정’에 의해 심판되었으나 1996년 정간법 개정 이후 반론보도청구는 모두 ‘판결’로 다뤄지게 되었다.

40) 서울지법남부지원 2003. 2. 13. 선고 2003카합14 판결.

41) 서울지법남부지원 1993. 10. 8. 선고 92가합16462 판결.

42) 서울지법남부지원 2003. 2. 13. 선고 2003가합14 판결.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신청인의 반론권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⁴³⁾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일용 방송사의 편성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반론권의 원래 취지가 인격권 침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동시에 대립된 사실주장을 제공해 줌으로써 시청자들의 균형 잡힌 시각을 도모하는 데 있음을 감안하면 인터뷰의 논지를 왜곡할 수 있는 짜집기식 편집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

셋째, 특히 반론보도청구소송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전략적인 반론의 회피와 역이용이다. 이승선(2001)에 의하면 반론권의 전략적 회피와 역이용이란 “기사나 프로그램의 취재·제작 단계에서 언론사가 의견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를 거부하거나, 혹은 접촉을 끊은 뒤에 제도적 절차를 밟아 반론보도를 강제로 집행케 하려는 대응방식”을 뜻하며 반론권이 남용되고 오용되는 대표적인 유형이다(229쪽). 반론권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는데, 표성수(1997)에 의하면 반론권은 필연적으로 언론에 보장된 편성, 편집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자신과 다른 의견을 취하였다고 반론을 널리 허용하는 것은 언론의 마비를 초래하고, 언론이 위축되고 그로 인해 시민들의 정보획득에 장애를 초래하며, 역시 시민자치의 민주정치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며, 시민들의 의사형성을 방해한다는 것이다(422쪽). 반론권의 오남용 중에서도 반론권의 전략적 회피와 역이용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방송사가 ‘반론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한 경우까지도 반론보도 청구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점에 있다. 다시 말해 취재·제작 단계에서 의도적으로 반론기회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반론보도청구의 정당한 이익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즉 반론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에 밝지 않은 국민들에게 단순한 반박의 보도일 뿐인 반론보도 행사를 진실의 승리, 잘못 보도된 내용의 수정 혹은 정정보도처럼 악의적으로 선전하는데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이승선, 2001, 231~232쪽).

탐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소송에서도 방송사가 취재과정

43) 서울지법남부지원 2003. 10. 9. 선고 2003카합2180 판결.

에서 부여한 반론의 기회를 신청인들이 회피하였거나, 충분히 활용하지 않았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반론권이 인용되었다. 즉, ‘방송사가 방송을 하기에 앞서 청구인측에게 수차례 반론의 기회를 주었으나 청구인측에서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반론보도청구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⁴⁴⁾ 그러나 동 사건에 대한 하정효의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은 ‘피신청인 회사의 거듭된 취재 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및 세계정교의 관계자들은 공식적으로 취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⁴⁵⁾ 또 방송을 위한 취재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충분한 반론의 기회를 주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반론권을 사전에 포기하였다는 방송사의 주장에 대해, “신청인이 인터뷰 내용이 편집과정에서 왜곡되어 방영될 것을 우려하여 피신청인의 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하되, 이를 침묵 없이 그대로 방영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하겠다는 답변을 하였고, 피신청인(방송사)이 이를 거부하여 결국 인터뷰가 무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신청인이 사전 방송과 관련된 반론권을 사전에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⁴⁶⁾

5)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형사처벌 사례의 특성

탐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특징은 방송내용의 공공성과 진실성에 입각한 상당성 이론의 법리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점, 방송내용의 공공성·진실성에도 불구하고 취재과정의 위법성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이 인용된다는 점, 손해배상청구의 피고를 방송사는 물론 제작자 개인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동의나 승낙의 범위를 벗어나 방송했을 경우

44) 서울지법남부지원 1999. 4. 22. 선고 99카합91 판결.

45) 서울지법 1999. 2. 20. 선고 98카합4070 결정.

46) 서울지법남부지원 2003. 2. 13. 선고 2003카합14 판결.

손해배상이 엄격히 인용된다는 것과 사인들의 범죄행위와 관련한 보도일 경우 범죄행위자의 초상·음성·사생활·명예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점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언론법 학자들은 현재의 97헌마265결정, 대법원의 2000다37524, 37531판결을 언론자유를 확장한 획기적인 결정·판결로 평가하고 있는바, 이후 대법원 등은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판결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격 존재의 정치적 표현에 관한 언론의 보도가 설명 진실성이나 진실오신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더라도 이를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입증부담 완화의 법리가 채택되고 있고⁴⁷⁾ 나아가 언론의 보도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⁴⁸⁾ 탐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최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프로그램의 공공성이 인정될 경우, 진실성 및 진실오신의 상당성 등을 이유로 세 건의 청구가 기각되었다.⁴⁹⁾ 광림교회가 문화방송과 소속 프로듀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사회적 범죄의 원인이 교회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에서 파생되고 있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면 그러한 문제점은 이미 사회적인 문제로서 국민들이 이를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고” 따라서 이 사건 프로그램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였다.⁵⁰⁾ 그러나 이러한 기각 심판 등은 면책확장론 혹은 입증부담 완화론의 법리에서 판단한 사건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상당성 이론에 입각, 공공성과 진실성

47) 이를테면,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48) 이를테면,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49) 덕성학원 등이 MBC <PD수첩>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소송, 탤런트 김미숙이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소송, 광림교회측이 MBC <PD수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소송 등은 모두 공공성과 진실성 등을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됨으로써, 청구가 기각되었다.

50) 서울지법 2001. 9. 26. 선고 2001가합11180 판결.

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사건이라고 보인다.

둘째, 설령 방송내용의 공공성과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재과정에서 취재대상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었다. 법원은 세계정교의 하정효 등이 청구한 사건에서 해당 방송으로 인해 하정효 등의 명예가 침해되었음을 인정하였으나 하정효는 ‘공적인물’로서 그의 성폭행 관련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며 공익을 위한 목적을 인정할 수 있고, 적시된 사실역시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재를 위해 PD 등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주거를 침입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사생활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다면서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 위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⁵¹⁾

셋째, 손해배상소송의 피고에 방송사는 물론 제작자인 프로듀서를 포함시키는 사례가 11건 중 5건이었고⁵²⁾ 그 중 한 건은 방송사를 제외하고 PD 한 사람이 피고가 되기도 하였으며,⁵³⁾ 이 중에서 3건이 인용되었고 2건은 기각되었다.⁵⁴⁾ 언론소송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나 언론사들이 소송에 본

51) 서울지법 2002. 4. 2. 선고 99가합78203 판결, 서울지법 98가합111257 판결.

52) 덕성학원 등이 <PD수첩>을 문제 삼아 MBC, 노혁진 PD와 김새별 PD를 피고로 청구한 소송, 하정효 등이 <PD수첩>의 윤길룡 PD를 피고로 하여 청구한 소송, 광림교회 등이 <PD수첩>의 MBC와 최승호 PD를 피고로 청구한 소송, 박기웅·나상국이 <그것이 알고싶다>의 SBS와 민인식 PD를 피고로 하여 청구한 소송, 정금자가 <PD수첩>의 MBC와 정성후 PD를 피고로 하여 청구한 소송 등이다.

53) 원래 피고에는 윤길룡 PD 외에 배성희 등 5명의 사인이 포함되었고 방송사는 제외되었다. 다만, 같은 사건을 이유로 하정효 등은 별건의 손해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MBC는 프로듀서의 사용자로서 위법행위에 따른 5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였다(서울지법 98가합111257 판결).

54) 덕성학원 등이 <PD수첩>을 문제 삼아 MBC, 노혁진 PD와 김새별 PD를 피고로 청구한 소송, 광림교회 등이 <PD수첩>의 MBC와 최승호 PD를 피고로 청구한 소송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하정효 등이 <PD수첩>의 윤길룡 PD를 피고로 하여 청구한 소송, 박기웅·나상국이 <그것이 알고싶다>의 SBS와 민인식 PD를 피고로 하여 청구한 소송, 정금자가 <PD수첩>의 MBC와 정성후

격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자나 PD들을 피고로 하여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은 언론인들의 취재와 제작 의욕을 크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송의 위협으로 인하여, 나아가 소송에서 패소하여 개인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두려움으로부터 취재·제작·편집진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을 시급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편집권의 성격과 주체, 편집권 행사에 따른 법적·경제적 책임의 범위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이를 노사간 협상에서 슬기롭게 해결해 가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넷째, 취재대상이 애초에 동의하거나 승낙한 범위를 벗어나 방송을 했을 경우, 혹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방송했을 경우, 어김없이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었다. 광기웅·나상국 사건,⁵⁵⁾ 이상한 사건,⁵⁶⁾ 정금자 사건⁵⁷⁾ 등은 동의·승낙의 범위를 벗어나 방송함으로써 사생활과 초상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이 인정돼 방송사(와 프로듀서들이)가 법적 책임을 져야 했다. 그리고 이강창 사건에서는⁵⁸⁾ 취재대상이 촬영거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촬영·방영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초상권과 음성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었다. 이강창 사건에서 법원은 “행위자가 ‘공적인 인물’(public figure)인 경우에는 행위자가 누구인지 여부 자체가 바로 공공의 관심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보도하는 것은 국민에게 그 관심사를 보도하는 언론의 기능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으나, 단순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그 행위자가 공적인 물이 아닌 이상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되는 것이지 그 ‘행위자’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다섯째,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취재·보도 과정에서 위법을 이유로 형사처

PD를 피고로 하여 청구한 소송 등은 인용되었다.

55) 서울지법남부지원 2000. 4. 2. 선고 98가합16587 판결.

56) 서울지법 2000. 3. 29. 선고 99가합34685 판결.

57)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58) 서울지법 1999. 10. 22. 선고 99나49001 판결.

별된 사례에서 나타난 점은, 프로그램 내용이 비록 공공성과 진실성을 갖춰 위법성이 조각되고, 또한 사회환경감시라는 언론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취재과정에서 빚어진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은 엄격하게 묻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탐사보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신문과 방송의 일반 보도기사의 취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취재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취재·제작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4. 결론

탐사고발 프로그램이 수행해 온 역할과 기능, 그리고 그에 대한 법적 분쟁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향후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공적 존재의 공적활동에 대한 탐사와 고발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고 법적 분쟁에서 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일부 확인되고 최근 언론소송의 일반적 인 추세는 공적존재의 공적활동에 대한 언론보도의 면책범위가 크게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취재·보도하는 사안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공공성이 인정될 경우, 진실하면 물론이거니와 결과적으로 진실하지 않더라도 진실한 것으로 믿었음직한 상당성의 폭이 크게 확장되었고, 의혹을 제기할 만한 정황이 인정될 때도 마찬가지로 언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경향이 줄어들고 있다. 나아가 법원은 언론으로 하여금 진실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엄격하게 묻어서는 안 된다거나 언론보도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니면 제한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그 위법성 조각의 조건은 공공성 확보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달성은 몇 가지 이유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우선 시청률 경쟁, 혹은 시청률을 의식하지 않고 공적활동에 대한 감시, 정

책에 대한 탐사와 평가, 공적존재의 비리에 대한 추적과 고발이 이뤄지기 쉽겠는가, 하는 방송구조상의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현재처럼 부족한 인력과 비용을 가지고 진실성을 입증할 만한, 공적존재에 대한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취재접근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객관적 현실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공적존재 등으로부터 가해지는 유무형의 방영금지 압력을 차단할 만한 장치가 충분히 강구됐는가, 하는 점이다. 이런 장치에는 법적 대응체계가 구축돼 있는가 하는 점도 포함돼야 한다.

둘째, 향후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취재과정에서 위법성을 배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대한 취재대상에게 실질적인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원의 판단에서 한결 같이 나타나듯이 탐사고발 프로그램의 목적과 취재내용의 공공성·진실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취재과정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책임이 요구되었다. 프라이버시나 초상권·음성권·명예 등의 인격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사회적 분위기 역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부정과 부패, 불의와 비리를 고발하려는 의욕이 앞서다보면 취재대상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취재절차에서 위법적 행위를 할 가능성도 역시 커진다. 그러나 위법적 취재가 불가피하고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한 윤리적 정당성이 확보될 때, 그리고 이러한 취재행위에 대한 방송사 차원의 체계적인 법적 대응 체계가 구축돼 있을 경우에 한하여, 보도담당 책임자와 그 활용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더불어, 취재대상에게 실질적인 반론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려는 제작진의 자세가 요구된다. 반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취재대상의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이를 시청하는 국민들에게도 대립되는 쟁점에 대한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반론기회의 제공은 손해배상 소송절차에 있어서나 형사처벌에 있어서 방송사·제작진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패가 되기도 한다.

셋째,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 인한 법적 분쟁에서 법원은 최근 언론소송 일반에 적용되고 있는 공적존재 보도에 대한 언론의 '입증부담 완화' 법리를 '일관되고 폭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폭넓게 적용돼야 한다는

은 손해배상소송 뿐만 아니라 방영금지가처분의 신청전에 있어서도 방영금지로 인한 언론의 취재보도 위축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적존재의 공적활동에 대한 보도일 경우, 사전금지를 억제하고 사후책임을 엄격히 따져보는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또 여기서 일관돼야 한다함은 그러한 언론의 사전제한을 억제하고 사후책임 여부를 따짐과 동시에 공적 존재에 대한 탐사와 고발, 의혹의 제기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엄격하게 묻어서는 안되고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언론의 자유를 쉽게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법리를 모든 법적 분쟁 사례에 적용해야 함을 뜻한다. 특히 취재과정에서 반론의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회피한 후에,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반론보도청구의 소송을 하는 경우, 법원은 취재대상으로 하여금 방송사의 보도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취재대상에게 엄격하게 소명·입증토록 요구함으로써 언론의 사회환경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균형 있는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판단할 필요가 있다.

넷째, 탐사보도 프로그램 제작진에 대한 재교육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유용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탐사보도 분야의 전문제작자들이 기존의 취재·보도 태도상의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적확하게 지적하고 이를 윤리적·법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한결같이 언론대학원 등의 학위과정에서 학업하면서 탐사보도 프로그램 제작·보도상의 실질적, 윤리적, 법적 문제점들을 천착하고 이를 극복할 새로운 탐사보도 기법의 개발에 골몰하고 있다는 것도 드러났다. 그렇다면 이들이 최소한 탐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이를 분석하고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새로운 취재·보도 기법을 개발하는데 온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형철 (2000).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발달과정. MBC PD수첩팀편, 『PD수첩과 프로듀서 저널리즘』, 나남, 120~159.
- 굿윈 저, 우병동 역 (1995). 『언론윤리의 모색』, 한나래.
- 김문환 (2001). 『TV고발뉴스 제작과 실제』,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상수 (1999). 탐사보도 제작과정과 외적 통제에 관한 연구: MBC ‘시사매거진 2580’의 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옥조 (2001). 『미디어윤리』, 중앙M&B.
- 김우룡 (2000).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중요한 까닭은 무엇인가. MBC PD수첩팀편, 『PD수첩과 프로듀서 저널리즘』, 나남, 97~119.
- 김재협 (1999). 위법적 취재관행과 법적 환경. 『언론중재』 제19권 제2호 통권71호, 62~79.
- 김진웅 (2000).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발달과정. MBC PD수첩팀편, 『PD수첩과 프로듀서 저널리즘』, 나남, 160~192.
- 문재완 (2004). 공인에 관한 최근 명예훼손 법리의 비교 연구. 『언론중재』, 제24권 제1호 통권 90호, 4~21.
- 성낙인 (1998). 『언론정보법』, 나남.
- _____ (2000). 시사고발 프로그램과 반론권. MBC PD수첩팀편, 『PD수첩과 프로듀서 저널리즘』, 나남, 195~228.
- 성선제 (2004). 최근의 언론관계판결 동향. 『언론중재』 제24권 제1호 통권90호, 51~62.
- 신 평 (2002). 『헌법적 관점에서 본 명예훼손 연구: 의견과 사실의 이분론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공법학과 박사학위논문.
- 윤 혁 (1999).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은폐적 취재방법과 인격권과의 충돌에 관한 연구: 블래카메라 사용을 중심으로.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은희현 (1998). 탐사저널리즘과 인격권고의 충돌에 관한 실증적 연구: ‘PD수첩’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광범 외 (2002). 『한국언론과 명예훼손소송』, 서울: 나남.
- 이규진 (2001). 언론자유와 사전제한의 법리. 『언론중재』 제21권 제4호 통

- 권81호, 20~35.
- 이승선 (2001). 반론권 행사에 있어서 전략적 회피와 역이용의 문제점: 방송사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소송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 15-3호, 221~259.
- _____ (2003). 방송금지가처분 제도와 언론자유 : 현실과 쟁점.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주최, 『제7회 PD포럼자료집』, 5~19.
- _____ (2004). 연예인의 인격권 침해유형과 언론소송에 있어서 ‘공적지위’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제18-3호, 293~334.
- 정길화 (2000). 제작진이 생각하는 PD수첩 10년의 의의와 과제. MBC PD수첩팀편, 『PD수첩과 프로듀서 저널리즘』, 나남, 49~59.
- _____ (2002).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방영금지가처분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규승 (2003). 개인의 인격권과 언론자유 의 균형을 조화롭게 유지해 나가야. 한국방송듀서연합회, 『방송시대』, 통권 24호, 102~109.
- 차용범 (2002). 공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판결기준의 변화 추세. 『한국언론학보』, 제46권 제3호, 414~445.
- 최 경 (2001). 시사고발프로그램에서 취재대상자와의 법적 분쟁에 관한 연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목 (2002). ‘PD수첩’이 기록한 500회의 ‘진실’: 프로듀서의 ‘자부심’ 혹은 문화방송의 ‘자존심’. MBC PD수첩팀 편, 『PD수첩, 한국PD저널리즘의 보고』, 커뮤니케이션북스, 47~84.
- 코바치·로젠스틸 지음, 이종욱 역 (2003). 『저널리즘의 기본요소』, 한국언론재단.
- 표성수 (1997). 『언론과 명예훼손』, 육법사.
- 한상혁 (2003). 방송금지가처분과 관련한 논의를 지켜보며.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방송시대』, 통권 24호, 119~126.
- 한영학 (2004). 프라이버시 침해와 출판 사전금지. 『언론중재』, 제24권 제3호, 통권92호, 62~71.
- 한위수 (2004). 공인의 명예훼손소송 관련 국내판결의 경향. 『언론중재』, 제24권 제1호 통권90호, 22~39.

- 한진만·박천일의 (2000). 『방송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황도수 (1998). 명예훼손에 대한 사전제한의 법리와 실제. 『언론중재』, 제18권 제2호, 통권 67호, 6~17.
- MacDougall, Curtis D. (1982). *Interpretative Reporting*, 8th ed. New York: Macmillan.
- Protest, David L. et al. (1991). *The Journalism of Outrage: Investigative Reporting and Agenda Building in America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최초 투고 2004. 9. 1, 최종원고 제출일 2005. 4. 5)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Lawsuits between the Freedom of the Press and Individual Rights over the Investigative Reporting Program

Seung-Sun Lee

Assistant Professor

(Dept. of Advertising and PR, Mokw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lawsuits against investigative reporting programs of the broadcast media. This study proposed three research questions: (1) what were the characteristics of court decisions on the investigative reporting programs? (2) what were the reasonings on which judges rely in the lawsuits for a right of reply? (3) what were the critical issues and how the libel laws were applied in balancing between the freedom of the press and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rights. To answer these questions, the study employed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analysing 35 related cases.

This study revealed that investigative reporting programs must deal with the issues of 'public figures' and 'matters of public concern' to be protected under the freedom of the press. The study also found that the broadcast media must prove legitimate public interests and the truth of the facts to prevail in a case. In 1999,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eld that public figures in libel cases must be regarded differently from private figures. In accordance with the decision, the Supreme Court has applied differing criteria for public figures in libel cases. However, courts have not set a clear definition of the public figure yet. To advocate the freedom of the press,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V producers and journalists should behave lawfully in the course of newsgathering and provide the opportunities of reply for their news sources.

Keywords: Freedom of the press, investigative reporting program, libel, Journalism, newsgathering, the rights of reply, public figures